

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02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9.

발 의 자 : 김영진 · 이연희 · 이해식
허영 · 김준혁 · 진성준
강득구 · 최혁진 · 차지호
민병덕 · 윤후덕 · 안태준
조승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고금 운용수익은 7,662억원에 달함. 국가는 현행 「국고금 관리법」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지출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의 운용 방식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「국가재정법」의 예산총계주의와 상충됨. 또한 세입세출예산은 그 규모와 사용처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반면 국고금 운용수익은 국회의 심의 권한이 제한되어 그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의 감독이 어렵고 재정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

이에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국고금 운용수익에 대한 국회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

는 것임(안 제34조제2항 등).

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065호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4항 단서 중 “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, 그”를 “이자와 관련한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”를 “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1항·제3항”을 “제3항”으로, “통합계정, 각 회계”를 “각 회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통합계정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에 이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생긴 수익금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1065호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(자금의 조달) ① ~ ③ (생 략)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자금 이 필요한 각 회계·계정, 통합 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 경제부장관이 조달한다. 다만,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<u>이자</u>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 <u>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, 그 부</u> <u>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.</u> ⑤ · ⑥ (생 략) 제34조(국고금의 운용) ① (생 략)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 로 생긴 수익금을 <u>세입세출예</u> <u>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</u> <u>사용할 수 있다.</u> 1.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 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<u>이자의 지급</u> 2. <u>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</u>	법률 제21065호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(자금의 조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<u>이자와 관련한</u>----- -----.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 제34조(국고금의 운용) ① (현행 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<u>다음 연도 일</u> <u>반회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</u> <u>다.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

<u>런되는 경비의 지급</u> ③ 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을 <u>제1항 및 제2항</u>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. ④ (생략) ⑤ <u>제1항·제3항</u> 및 제4항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이를 운용하는 <u>통합계정, 각 회계</u>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한다. ⑥ ~ ⑧ (생략)	③ ----- ----- ----- -----<u>제1항</u>-----.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제3항</u>----- ----- -----<u>각 회계</u>----- -----. ⑥ ~ ⑧ (현행과 같음)
---	--